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3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3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3
나.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이언주의원안)	15

I. 개요

1.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9.
- (3) 회 부 일 : 2025. 5.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팩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스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원천기술연구개발비³⁾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당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이 추가되었음³⁾.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3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2. 28.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4)]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4)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었으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2025년 10월 기준).

분야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분야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2. 28. 개정)

□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모두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2024년 기업 결손 발생으로 공제액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기업 실적 회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이월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⁵⁾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4조 6,302억원에서 2024년 2조 9,57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5	951	99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0	40,522	42,964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41,473	43,954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3년 2조 799억원에서 2024년 1조 7,69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477	1,50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424	24,204	28,571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693	25,681	30,076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163개가 1조 3,398억 3,200만 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584개가 1조 5,161억 3,200만 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073	16,914	1	0
20억원 이하	5,980	47,225	3	98
50억원 이하	11,292	172,356	8	218
100억원 이하	8,110	220,769	15	424
200억원 이하	5,437	251,052	40	2,444
300억원 이하	2,052	153,812	46	2,526
500억원 이하	1,754	182,008	76	6,914
1,000억원 이하	1,173	199,823	164	24,890
5,000억원 이하	292	95,873	846	264,524
5,000억원 초과	0	0	385	1,214,094
합계	40,163	1,339,832	1,584	1,516,132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375개가 4,484억 5,400만 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899개가 1조 1,036억 2,000만 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223	2,212	4	166
20억원 이하	1,094	4,481	2	27
50억원 이하	1,979	17,187	11	258
100억원 이하	1,717	34,593	34	715
200억원 이하	1,724	64,686	70	2,733
300억원 이하	817	51,818	69	3,603
500억원 이하	908	89,515	126	7,554
1,000억원 이하	708	115,518	241	22,376
5,000억원 이하	205	68,443	899	230,499
5,000억원 초과	0	0	443	835,687
합계	10,375	448,454	1,899	1,103,620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이언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및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및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방위산업 추가(윤한홍의원안, 허성무의원안) - 양자컴퓨터 추가(정일영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로봇 추가(구자근의원안) - 원자력 추가(허성무의원안) -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이언주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우주항공 추가(허성무의원안, 박대출의원안) - 해상풍력 추가(이언주의원안) - 철강 추가(강승규의원안) -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포함 명확화(황정아의원안) - 클라우드컴퓨팅 추가(김상훈의원안) - 재생에너지 추가(박지혜의원안) - 지속가능항공유 추가(문진석의원안) - 조세특례 대상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규정(서범수의원안)

* 윤한홍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53), 정일영의원안 2025. 2. 6. 발의(의안번호 7924), 구자근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0), 허성무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67), 이언주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3), 강승규의원안 2025. 7. 4. 발의(의안번호 11290), 안철수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1), 황정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9),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박지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3), 박대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29), 문진석의원안 2025. 9. 18. 발의(의안번호 13087), 서범수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2)

1)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허성무의원안)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추가(이언주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SMR)⁶⁾를 추가하려는 것임.

□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2024년 기준 총 전력생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발전비중인 30.7%에 비해 1.8%p 증가하였음.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6기가 운영 중이고,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와 2024년 착공한 신한울 3·4호기까지 향후 투입될 경우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23년도 32조 1,556억원으로 전년도 25조 4,234억원 대비 6조 7,322억원(26.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원자력발전사업자는 26조 2,659억원(81.7%), 원자력공급산업체는 4조 5,863억원(14.3%), 연구·공공기관은 1조 3,034억원(4.1%)을 차지하고 있음⁷⁾.

2023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10조 718억원으로 2022년도 9조 2,968억원 대비 7,750억원이 늘어 8.3% 증가하였음.

6) SMR은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함.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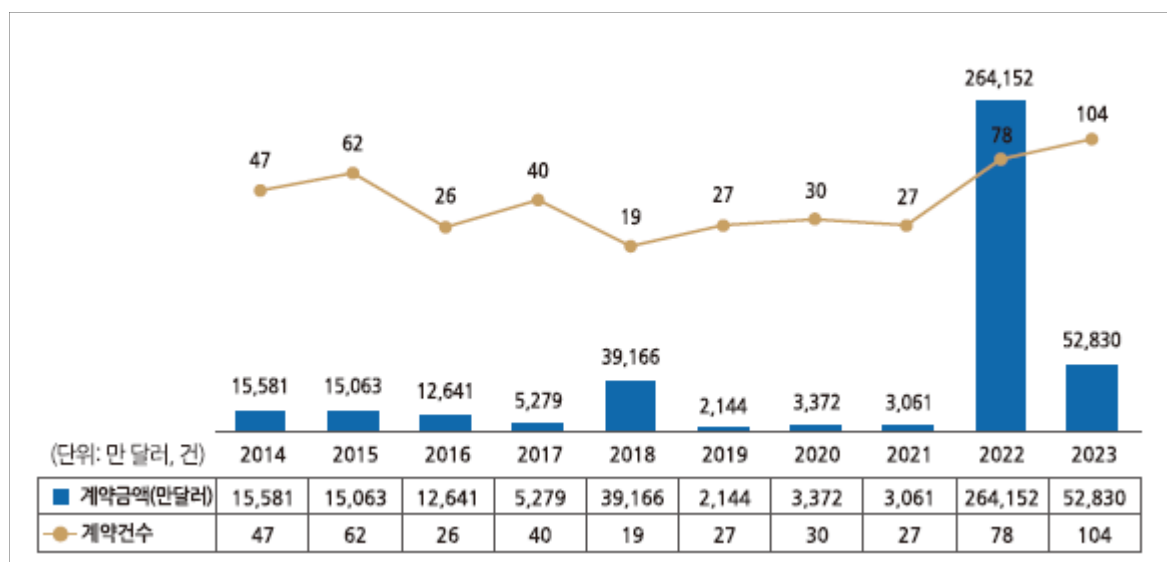
[원자력산업분야 투자액 규모 현황]

연도	2022	2023	증감액 (증감률)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 8,216억원	8조 1,896억원	3,680억원 (4.7%)
원자력공급산업체	2,485억원	4,880억원	2,395억원 (96.4%)
연구·공공기관	1조 2,267억원	1조 3,942억원	1,675억원 (13.7%)
합계	9조 2,968억원	10조 718억원	7,750억원 (8.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5. 4.

2023년에는 13개국에 104건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수출액은 52,830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2022년도 대비 수출건수는 26건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크게 감소한 수준임.

[원자력산업분야 해외수출 계약금액 및 건수 추이]



(단위: 만달러, 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5. 4.

글로벌 에너지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이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2030년에는 그 비중이 5.5%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1년 원자력 공급량은 732Mtoe인데, IEA는 2050년에는 공급량이 1,147MTo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임.⁸⁾

2023년 4월 기준,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436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극동아시아 116기, 북미 112기, 서유럽 93기, 중앙·동유럽 74기, 중동 및 남아시아 32기, 남미 7기, 아프리카 2기가 운영 중임.

2000년 이후 글로벌 원전기수 및 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이후 독일·미국·영국 등에서의 원전 폐쇄로 인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8) 한국에너지공단, 「2024 KEA 에너지편람」, 2024. 5.

[세계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IAEA PRIS(2023.04.1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참조

한편,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혁신형 SMR을 개발하여 2030년대 초도호기 상업운전 개시 및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⁹⁾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개발 및 실증 신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 간 1조 6,49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원자력 또는 SMR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9) 정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안)」, 2024. 5.

확대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각국에서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action Act: IRA)’(2022년 8월) 등을 통해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특히, IRA 제정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가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는데, 가동 중 원전과 신규 및 차세대 원전 등에 대한 생산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음.

프랑스는 2021년 10월 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SMR 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하였음. 일본은 2023년 2월 ‘선진 원자로 개발 공정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성숙도에 맞춘 선진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음. 영국은 신생기업의 SMR 산업 진출지원을 위한 미래 원자력 활성화 기금(FNEF)으로 1.2억파운드를 배정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원자력 및 SMR은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

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2) 국가전략기술에 해상풍력 추가(이언주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재생에너지¹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장기목표를 규정하였음.

이후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하였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적 태양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과 더불어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조, 설치, 운영 등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2038년까지 40.7GW의 풍력발전 설비용량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3GW(육상풍력 2.0GW, 해상풍력 0.3GW)로 2030년 전망 19.3GW 대비 약 12%에 불과한 상황임.

□ 개정안은 해상풍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해상풍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가 확정하여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인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탄소중립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필요함.

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해상풍력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주요국과의 기술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의 풍력 분야 기술수준은 유럽 대비 평균 76.7%에 불과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기술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풍력 분류체계별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결과]

구 분	기술수준(기술기준 국산화율)					최고기술포유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블레이드	80.0	95.0	95.0	100.0	80.0	80.0
발전기	70.0	80.0	95.0	100.0	90.0	70.0
고정식 하부 구조물	80.0	85.0	90.0	100.0	85.0	80.0
부유식 구조물 (부유체, 계류선, 앵커)	70.0	70.0	87.5	100.0	80.0	70.0
시험 및 인증	78.0	80.0	90.0	100.0	70.0	78.0
운송/설치	80.0	86.5	90.0	99.0	80.0	80.8
계통	80.0	85.0	87.0	100.0	85.0	80.0
해상변전소(고정식)	70.0	90.0	90.0	95.0	85.0	73.7
운영/유지보수	65.0	80.0	90.0	100.0	75.0	65.0

주 1) 일부 조사기술 대상 만을 기입하였으며 모든 기술에 대한 최고기술포유국은 유럽임

2) 고정식 하부 구조물과 부유식 구조물은 해상 하부 구조물에 해당함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2022. 9.

셋째, 2025년 3월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¹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1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3.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 추진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은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둘째,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현재도 해상풍력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임.

「해상풍력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¹²⁾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32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보증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지원대상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액이고 총 보증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함.

문 의 처
02)6788-5154

1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상풍력발전설비, 부품 등의 표준화
5.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6.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3.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